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과 태도: 타전공 대학생과의 비교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on Child Abuse - Preparation with other Major Students -

김 태 연¹⁾ 정 현 심²⁾
Tae Yeon Kim Hyun Sim Jung

I. 서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들이 제정되고 있으나,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는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기는 인간의 성격과 가치관의 기반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겪은 불안과 고통은 전 생애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성인기 중범죄를 예측하는 주요요인으로 고려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일한 학대 경험을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극복한 아동의 사례에서는 초기발견 및 대처,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특정 성인의 존재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허경미, 2014).

2013년에서 칠곡과 울산에서 일어난 아동 사망 사건은 사회적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었다(김슬기, 2014). 아동의 권리 및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관련법들이 정비되었고, 대표적으로 2013년 「아동복지법(법률 제11572호)」의 전면개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4호)」 개정 이후,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 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법무부,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 성향을 높이고(임선아, 2015; 장신재, 양혜원, 2015), 아동이 사회적으로 위축되도록 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한다(박기원, 2014).

본 연구는 이후 아동학대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학교에서 아동학과와 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두 집단 간 응답을 비교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검사 도구로는 정중오(2008)의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아동학대 신고인식 태도 척도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대신고 제도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는 아동학대 목격 시 타전공 대학생보다 신고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신고의 저해요인으로써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신고의향을 높이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의 정확한 전달과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대 신고의 정확한 방법과 필요성, 효과성에 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후 정책 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아동학대
(Child Abuse)
예비보육교사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인식과 태도
(Perception and Attitude)

1)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겸임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achishis@naver.com)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강의교수, 공동저자

또한, 아동학대는 이후 청소년기의 높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학대의 피해자였던 아동이 반대로 학대로 인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극단적 사례에서처럼 학대는 학습되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Thornberry, Ireland, & Smith, 2001). Kaye와 Sapolsky(2001)의 연구에서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인한 폭력 환경에서 자라난 아동은 폭력에 무감각해지고 허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아동학대는 단지 해당 학대건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폭력과 학대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고, 현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비행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보호 및 CCTV 설치에 관한 사안이 주목받으면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으나(정현심, 김태연, 2015), 아동학대 문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실제 학대 사건의 대부분이 유아교육기관에서보다는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정 내 학대를 사생활 및 양육권의 문제로 보아 부모에 의한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거나 학대상황에 개입하는 데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부분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81.8%), 주요 발생 원인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 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10.0%) 등이 보고된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즉, 아동학대의 절대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외부보다 가정 내부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초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의 신속하고 적절한 사회적 개입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신고된 접수 29,674건 중, 재신고에 해당하는 건수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하지만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들은 업무량 과다와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개별 업무에 대한 충실성 및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이경은, 김미정, 2014;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김경희, 장화정, 2017). 따라서 실제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기관을 포함한 전문기관의 도움만을 바라기보다 아동을 가까이에서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과 대응을 위한 정확한 정보 및 적극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천현, 2018).

보육교사는 가정 내에서 묻히기 쉬운 아동학대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10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제에 관한 규정은, 보육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다. 아동이 처한 학대의 정황을 가장 먼저,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자원으로써 보육교직원을 규정하고 있다(오숙자, 2015; 유흥옥, 유영의, 이진희, 2013).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 7,219건이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3년에 10,000건을 넘어선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5,878건을 기록하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그러나 전체 신고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의 비율은 2008년 이래 지속적으로 29~33%로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아동을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보육교사는 학대의 신고자뿐 아니라, 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교육 및 부모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역할로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영화, 이숙자(2018)에 따르면, 많은 학부모가 유아교육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 및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아동학대와 관련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학대예방교육 실시에 차이가 있었다. 많은 학부모가 학대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직접 시행하기에는 교육시행을 위한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담임교사에 의한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이혜란, 전영순, 2007).

이처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은

보수교육 등을 통한 단기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교과과정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김의향, 신혜원, 2014). 아동보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기반을 만드는 예비보육교사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아동학대의 현황, 신고방법만을 배우기보다는 대학전공과정에서부터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여 아동과의 올바른 상호작용, 심리적 치료, 상담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태연, 2015; 이미정, 2013).

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연달아 보도되는 교사에 의한 학대 사건과 아동학대 억지력(抑止力)에 대한 실제적 검증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CCTV의 설치하는 보육교사들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로서보다는 학대의 가해자로서 부각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특히 예비보육교사들이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많은 예비보육교사가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 앞서 학대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압박으로 인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차영숙, 문혜련, 2009).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동학과를 포함한 보육관련학과의 전공과정 커리큘럼 변경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5년 1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된 이래,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온 자격인정교과목에 최근 새로운 영역과 과목이 추가된 것이다(김의향, 신혜원, 2014). 2016년 8월부터 시행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에는 '교사인성' 영역이 추가되고, 이 안에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이 필수 편성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인성교육은 보육교사뿐 아니라 경찰, 소방관, 법관, 심지어 회계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직업군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전공 교과과정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자칫 예비보육교사들이 자신을 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라고 인식하게 하여 자존감과 의욕을 낮출 위험성이 있다.

뉴스에서는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

트레스 때문에, 혹은 어떤 행동이 학대인지 모르는 아동권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존의 보육교사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배우거나 학대가 무엇인지 알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전공 교과과정을 거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는지, 해당 교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타전공학생들과 비교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첫째로,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의 권리나 아동이 학대받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동학대 및 학대신고에 대한 인식 변인은,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인식, 신고방법, 신고제도, 신고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즉, 아동학대 및 신고에 관한 지식적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미래에 신고의무자가 될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태도 변인은,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시 신고하고자 하는 의향과 신고 효과에 대한 기대,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방법과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신고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대를 인지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양명자, 2015).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하며, 타전공 대학생의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 수준은 어떠하며, 타전공 대학생의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려고 하였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5개 대학교에서 아동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아동학 전공의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대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있다는 선행 연구(박금하, 2004)의 결과를 참조하여, 타전공 중 여자의 비율이 높은 음악계열과 식품영양학 계열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한 아동학전공자들에게 수강과목을 표기하게 하여, 최근 추가된 교사인성 영역의 ‘보육교사인성론’과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 수강자를 제외하였다. 해당 과목의 경우, 개설된 시기가 짧고, 학교별 편성 여부로 인해 수강자의 비율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과목의 운영목적은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주제인 아동권리 및 학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수강자와 비수강자가 혼재할 경우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전공과목에서도 예비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수준의 아동권리 및 학대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인성영역 비수강자, 즉 기존 아동학 전공 교과과목 수강자의 설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수거된 설문지 217부 중 부실응답자 19명과 교사인성 과목 수강자 9명을 제외하고, 아동학전공자 107명과 타전공자 73명, 총 18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인원수	비율
성별	여자	153	85.0
	남자	27	15.0
학년	1학년	54	30.0
	2학년	59	32.8
	3학년	23	12.8
	4학년	44	24.4
전공 여부	아동학 전공	107	59.4
	타전공 (음악, 식품영양학)	73	40.6
총계		180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신고 관련 인식과 태도에 관해 질문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인식척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무 태도 척도 및 기타 관련 문항을 사용하여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식 관련 질문은 주로 관심 여부, 인지 여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었고, 태도 관련 질문에는 신고의향이나 신고의 효과성, 저해요인에 대한 의견 등의 주관적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1)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문항은 학대에 대한 개념 인식, 신고방법, 신고의무에 대한 지식 등 지식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안재진(2002), 김지경(2002),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종오(2008)가 수정·보완한 아동학대 인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학대 상황을 신체적(4문항), 정서적(4문항), 방임(5문항), 성적 학대(4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심각성 수준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4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신체적 학대는 .608, 정서적 학대는 .760, 방임은 .781, 성적 학대는 .75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추가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지식 수준을 묻는 질문을 시행하였다. 해당 부분에는 아동학대 관련 관심 여부,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보육교사의 신고의무자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2)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

아동학대 신고 태도에 관한 문항은, 신고에 대한 의향이나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 등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김소연과 윤혜미(200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5문항)과 저해요인(8문항)의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이 연구에서 척도 전체의 신뢰도는 .696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신고효과성은 .719, 신고 저해요인은 .774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아동학을 전공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인식

1)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관심

아동학대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의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하기에 앞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예비보육교사(100%)는 물론, 대부분의 타전공 대학생(95.9%)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유아교육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문제가 TV뉴스나 신문기사 등에서 많이 다루어진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전공 과목을 통해 아동학대의 문제를 접하게 되는 예비보육교사 외에, 타전공의 대학생들도 뉴스와 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 아동학대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지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보육교사인 아동학전공자들이 아동학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학대 전체($t = 4.27, p < .001$)와 신체학대($t = 4.12, p < .001$), 정서학대($t = 3.06, p < .01$), 방임($t = 3.84, p < .001$) 등 성학대를 제외한 3가지 하위영역에서 예비보육교사의 학대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이 타전공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 상황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즉, 예비보육교사들은 성학대를 제외한 대부분 학대상황에서 타전공자들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기관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에는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

표 2.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의 아동학대 상황에 심각성 인식 차이

문항	아동학 전공 여부		<i>t</i>
	예비보육교사(<i>n</i> =107)	타전공 대학생(<i>n</i> =73)	
전체 학대 상황에 대한 심각성 인식	2.99 (0.45)	2.73 (0.50)	4.27***
신체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	2.97 (0.42)	2.71 (0.40)	4.12***
정서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	2.67 (0.61)	2.39 (0.58)	3.06**
방임 상황에 대한 인식	3.09 (0.56)	2.77 (0.55)	3.84***
성학대 상황에 대한 인식	3.19 (0.79)	3.04 (0.50)	1.75

** $p < .01$, *** $p < .001$

라서 응답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담당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 나타나듯,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경찰서나 파출소를 선택하였다.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3.32, n.s.$). 그러나 한국어린이보호회나 시립아동상담소 등의 잘못된 기관을 선택하는 학생이 다소 많았으며, 예비보육교사 중에도 30% 정도가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기관을 잘못 알고 있었다.

표 3. 아동학대 신고 및 담당기관

아동학대 담당기관	아동학 전공 여부		χ^2
	예비보육교사 (n=107)	타전공 대학생 (n=73)	
시립아동상담소	5(4.7%)	4(5.5%)	3.32
한국복지재단	1(0.9%)	1(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40(39.3%)	26(35.6%)	
한국어린이보호회	27(25.2%)	17(23.3%)	
한국이웃사랑회	0(0.0%)	2(2.7%)	
경찰서나 파출소	32(29.9%)	23(31.5%)	

4)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지와 정보획득 경로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대학생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비보육교사 중 91명(85.0%), 타전공 대학생 중 54명(74.0%)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 = 3.40, n.s.$). 즉, 전공과 상관없이 대부분 대학생이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에는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17.11, p < .001$)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 가장 많은 수가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타전공자는 대중매

체라는 응답률이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예비보육교사의 경우 대중매체가 48.3%, 교육 및 세미나가 42.7%라고 응답하였다.

표 4.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신고제도 인지 경로	아동학 전공 여부		χ^2
	예비보육교사 (n=107)	타전공 대학생 (n=73)	
대중매체	43(48.3%)	39(76.5%)	17.11***
인터넷	5(5.6%)	3(5.9%)	
세미나 및 교육	38(42.7%)	5(9.8%)	
기타	3(3.4%)	4(7.8%)	

*** $p < .001$

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인지와 정보획득 경로

다음으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예비보육교사 대부분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알고 있었다. 아동학전공자임에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1학년이었으며, 대학 교과과정의 흐름을 보면 1학년 때에는 전공과목 외에 교양과목을 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5에서처럼,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80.4%)고 응답하였으나, 타전공 대학생의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76.7%)고 응답하여,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57.77, p < .001$)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알게 된 경로는 교과과정(50.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중매체(27.9%)의 순이었다. 신고의무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표 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여부 인지

보육교사의 의무 인지	아동학 전공여부		χ^2
	예비보육교사 (n=107)	타전공 대학생(n=73)	
알고 있다	86(80.4%)	17(23.3%)	57.77***
알지 못한다	21(19.6%)	56(76.7%)	

*** $p < .001$

2.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태도

1) 아동학대 목격 시 신고의향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때 외부기관에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3.99$, $p < .001$). 예비보육교사 대부분(88.8%)이 신고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타전공 대학생은 반 정도(57.5%)가 신고하겠다고 대답하였고, 39.7%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타전공자 중 2명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다.

표 6. 아동학대 신고의향

아동학대 신고의향	아동학 전공여부		χ^2
	예비보육교사($n=107$)	타전공 대학생($n=73$)	
신고할 것이다	95(88.8%)	42(57.5%)	23.99***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0(0.0%)	2(2.7%)	
잘 모르겠다	12(11.2%)	29(39.7%)	

*** $p < .001$

2)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다음으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대학생들의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고의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없었다($t=1.97$, $n.s.$). 예비보육교사(2.76점)와 타전공 대학생(2.85점) 모두 학대 신고가 실질적이고 적절한 사후 조치 및 효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운정과 신혜령(2013)의 연구에 따르면,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후에는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고접수 후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의 신고 효과성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킴으로써, 신고 의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아동학대 신고의 저해요인

학대신고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생각 역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없었다($t = -.27$, $n.s.$).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 신고 저해요인에 대해 모수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통계적 우연수준인 3점보다 낮은 수준(예비보육교사 2.44점, 타전공 대학생 2.53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고 저해요인 중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M = 3.29$), 보복/비난에 대한 두려움($M = 3.08$), 신고 후 책임/역할에 대한 부담($M = 3.00$)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반면 신고의 귀찮음($M = 1.83$)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신고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 후 신고자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보복/비난/책임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전공과정에 있는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타전공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아동학 전공 및 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중 180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인식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는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 자주 접하고 있었으나, 예비보육교사가 타전공 대학생보다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이후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상황을 발견하고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부분 학대상황에서 예비보육교사가 상황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지했지만, 성학대에 관해서는 타전공 대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예비보육교사들과 유사하게 높았던 부분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지속적인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이혜란, 2004).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성 학대에 대

한 인지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은, 최근 이슈가 된 아동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아동양육에 있어 다른 상황보다도 성적인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방법과 관련해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 아동학대 담당기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던 점은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다. 응답자의 1/3 정도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는 기관명에서 기존의 ‘학대’라는 단어가 빠지고 ‘보호’라는 단어가 들어가 새롭게 변경된 데에서 비롯된 제한점으로 사료된다.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 전화 112와 보호기관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며,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답하였다. 다만 타전공자의 경우 정보원이 대중매체에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아동학 전공 예비보육교사의 경우 교육 및 세미나, 즉 전공수업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다. 이는 첫째, 아동학대 관련 정보에 있어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시사하며, 앞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타전공자 대부분이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획득과 마찬가지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정보에서도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 아동학대 신고제도를 알리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공자와 타전공자를 막론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간의 확연한 인식 차이는, 예비보육교사들을 위한 아동학 교과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정황, 신고방법, 신고의무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 관련 태도에 있어,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예비보육교사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지만, 타전공 대학생의 경우에는 반 정도가 신고하겠다고 답하였고, 잘 모

르겠다고 답하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는 다른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예비보육교사의 경우, 아동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전공수업에서 접한 아동학대의 심각성, 신고에 대한 교육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고의향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과의 전공 교과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이 그들의 예비보육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향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및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예비보육교사와 타전공 대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었으며, 그럼에도 신고 저해요인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 양육에 대한 문화적 특성상, 신고 처리 후의 결과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인식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처리과정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학대신고가 실제로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해야 하며, 동시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결과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필요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고 저해요인의 하위요인 중 귀찮음이나 부담감 관련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았던 반면, 가정의 양육권 보호나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우려 문항의 점수가 높았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은 귀찮음 등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이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라는 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신고를 꺼린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한 아동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위로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예비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함에도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후 현장에서의 학대예방 및 대처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이후 학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보육교사에게 있어 쉽지 않은 행동이기에,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없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에는 교사의 신고가 실제 어려움

에 부당한 아동을 도울 수 있었던 사례 및 학대신고절차, 처리방식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실제적인 홍보를 통해 교사들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응답 결과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은 타전공 대학생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심각성 인식 및 정확한 정보 수준, 신고를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1학년에 비해 전공수업을 들은 2, 3, 4학년에게서 두렷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대학에서의 전공수업이 그들에게 아동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김태연, 2015).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추가된 보육교사 인성 영역의 과목 수강은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보다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통합교사 자격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이미정, 2013)에서 아동권리와 복지에 관한 과목이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그리고 이후 유보통합 후의 통합교사 자격체계에서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을 강조한 것과 일관된 결론이다.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4년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은 규모의 설문을 시행했다는 점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후에는 예비보육교사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양성기관 및 2, 3년제 전문대학의 학생을 포함하며, 심층 면접 등의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인식 및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데에 그쳤으나, 추후에는 이런 태도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요소를 보육교사 양성프로그램 및 전공 교과과정 구성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확장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예비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보육교사들의 교육에 있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살펴봐왔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에도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비보육교사뿐 아니라 타전공 대학생 대부분이 아동학

대 신고의 효과성에 대해 낮은 기대수준을 보였으며,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했다는 사실은 이후 신고접수 및 처리과정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참고문헌

- 김소연, 윤혜미(200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연구논총**, 7(1), 1-20.
- 김슬기(2014). 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법학연구**, 24(2), 201-229.
- 김의향, 신혜원(2014). 2급 예비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과개요 개정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4(3), 229-252.
- 김지경(2002).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서울시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연(2015). 예비보육교사의 전공과목 수강에 따른 보육교사 전문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5(3), 193-209.
- 박금하(2004).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원(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 법무부(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53&ancYd=20140128&ancNo=12341&efYd=201409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7월 29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2).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17&ancYd=20110804&ancNo=11002&efYd=201208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8월 28일 인출
- 보건복지부(201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8904&ancYd=20151231&ancNo=00388&efYd=2016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7월 30일 인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pp. 179-202). 세종: 보건복지부.
- 성영화, 이숙자(2018). 영유아 학대예방 관련 부모교육 및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실태. **한국보육학회지**, 18(1), 125-146.

- 안재진(2002).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 학부모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양명자(2015).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신고의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2).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26&ancYd=20110804&ancNo=11002&fYd=201208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8년 7월 29일 인출
- 오숙자(2015). 보육교사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소진이 조직 헌신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2), 45-64.
- 유홍욱, 유영의, 이진희(2013). 예비·현직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심각성 및 신고의 효과성, 신고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보육학회지**, 13(3), 241-257.
- 이경은, 김미정(2014). 아동보호문기관 상담원의 분리보호 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207-234.
- 이경은, 염동문, 김미정, 김경희, 장화정(2017). 아동학대 위험사정문항개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3(3), 73-100.
- 이미정(2013). 통합교사 자격체계 방안의 모색. **한국보육학회지**, 13(4), 387-402.
- 이천현(2018).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소고. **소년보호연구**, 31(1), 1-30.
- 이혜란(2004). 성 학대 피해 아동 치료에 관한 일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4(2), 129-148.
- 이혜란, 전영순(2007). 문학적 접근에 기초한 유아 성 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29.
- 임선아(2015). 아동학대 피해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매개하여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가족소득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85-108.
- 장신재, 양혜원(2015). 부모의 방임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관계에 미치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2), 133-156.
- 정종오(2008).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심, 김태연(2015). 어린이집 CCTV에 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타전공대학생과의 비교. **아동교육**, 24(4), 293-309.
- 조운정, 신혜령(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 213-237.
- 차영숙, 문혜련(2009).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한 유아교육기관의 아동학대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58, 61-80.
- 허경미(2014). **현대사회와 범죄학**. 서울: 박영사.
- Kaye, B. K., & Sapolsky, B. S. (2001). Offensive language in prime time television: Before and after content rating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2), 303-319.
- Polanin, J. R., Espelage, D. L., & Pigott, T. D. (2012).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effects on bystander intervention behavior. *School Psychology Review*, 41(1), 47-65.
- Thornberry, T. P., Ireland, T. O., & Smith, C. A. (2001). The importance of timing: The varying impact of childhood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multiple problem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957-979.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on Child Abuse – Preparation with other Major Students –

Tae Yeon Kim

Adjunct Professor,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ersity

Hyun Sim Jung

Full Time Teaching Professor, Dept. of Human Ecolog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who will become the closest witnesses to child abuse, and also whether they have the proper knowledge and attitude to report abuse.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at five universities in Seoul and Kyonggi-province. We investigated students from child development major, and additionally students from other majors as a comparative group.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level of abuse sever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major students. They were more aware of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and reporting obligations than other major students. Second, pre-service teachers had higher intention of reporting than other major students. However, both groups barely know about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nd have negative perception on the effect of reporting.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e-service teachers are more aware of child abuse and willing to report than other major stude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report effectiveness. Also, it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making related to child abuse by suggesting that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promotion through mass media is necessary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risk of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the complainant in reporting abuse.

Received July 30,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22, 2018

Accepted September 6, 2018